



技術士法의 再制定과 進路

鄭　暉　琡
Chung, Byung Sook

1. 技術士法은 再制定으로 活性化되어야 한다.

가. 技術士는 社會的인 관현성이 있어야
技术士는 機械·金屬·化工·電氣·電子·
通信·造船·航空·土木·建築·纖維·鑄業·
情報處理·에너지·國土開發·海洋·安全管理·
生產管理·環境管理·食品·水產·應用地質·
地球物理·林產·畜產等에 관한 高度
의 科學技術的인 能力과 實務經驗을 갖고 있는
者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專門知識을 가진 者들은 각양의
形態로 構成되고 있는 社會的인 要素들과는
필연적으로 密接한 聯關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的으로는 活動되고 있는 國民生
活에 도움을 주게하는 直間接的인 役割을 하
게되는 것이다.

技術士들이 담당하게되는 社會的인 役割에
는 機械나 化工等과 같이 1個專門能力으로 감
당할 수도 있고, 여러개 技術部門의 複合的인
상태로 감당해야 할 경우도 있을것이다. 또는
部門에 따라서는 技術的인 強弱性이 綜合化되
어야 할 것이다. 어떤 形態나 樣相이 되었던
國民들의 社會生活에 대한 質的向上을 위해서
密着된 關係를 갖고 有能하고도 效果的인 作用
을 해야 할것이다.

나. 技術士는 經濟的인 貢獻性이 있는 活動
이 되어야

19世紀에 英國에서의 產業革命은 國民經濟
生活을 急進的으로 向上케한 것은 너무나 歷
史的으로도 有名한 일이다.

이 原動力은 두말할 것 없이 機械化發展을
이루어지게한 技術開發이고 實用性이 있었던
것이 큰 效果를 나타나게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革新的이고도 經濟的인 貢獻이
된 것으로는 近來의 自動化시스템·簡便化 시
스템等인 것이다. 이와같은 技術性의 發揮는
1,000名分의 人爲的作業力を 단 1人の 作業者
로 수행시키는 經濟性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일
일이 “버튼”操作하던 일을 “리모콘”을 사용하
는등 사람을 피로하게 하는 動作을 簡素化시켜
준 經濟的 effect에 이르기까지 千態萬像의 形態
로 貢獻이 되게하는 技術士의 活動은 國家經濟
發展에 重要한 效力を 發生케 하는 것이다.

다. 科學技術的인 發展이 되게하는 技術士가
되어야

政府機關·學界·企業體들에 屬하고 있는
各種 研究團體들의 技術에 관한 研究는 대단히
重要하고도 經濟的 社會發展에 큰 原動力を 갖
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實務的인 측면에서보면 이들 각 機關
이나 領域만으로는 全般的인 모든 問題들을 解
決하고 좋은 結果를 얻어낸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日常的인 技術的 業務活動을 하고 있는
技術士들이 크고 작은 技術的 問題點들을
하나씩 改善해 나가게하는 役割을 담당하므로
서 티끌모아 泰山을 이루는 것과 같이 科學技

* 產業應用(工場管理技術士) (社) 韓國技術士會 副會長

術發展의 效果를 가져오게 할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各者의 專門知識을 資產化하고 이 資產을 社會的인 各方向이나 分野에서 投資를 實施할때 이로 因한 收獲의 效果는 몇倍에서 몇 10倍 또는 수 100倍를 겉을수 있을 것이다.

2. (舊)技術士法은 國家技術資格法을新生시키는 責務만을 遂行하고 사라졌다.

國家經濟發展 5個年計劃을 實現하고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하기 위해서 탄생한 (舊)技術士法이 1963年에 制定되어, 10余年동안 施行해 오던 幼年期에 技術士들의 活性化效果가 複로 없게되자 活性化促進을 위해서 지금의 技術用役育成法이 制定되고, 또 技術系·機能系의 呼稱이나 活用에서 社會的으로 大混亂期를 맞이하자 지금의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1973年)을 보게 된 것이다.

이무렵에 政策立案者나 關係者들은 國家技術資格法이 社會的·經濟的측면에서 科學技術開發에 寄與할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에 (舊)기술士法을 母體로 하면서 이 母體를 사라지게한 (廢止)失策을 남기게 하였다. 즉 具體的으로 活性化시킬수 있는 母體聯關法인 技術士法으로 存續시키지 못한 點인 것이다.

3. 國家技術資格法은 多種인 技術資格들을 統一化形成시키는데만 主力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的 部門들인 機械·金屬等 多種이 되면서 技術資格區分으로 技術系와 機能系로 區別되고 技術系는 技術士, 기사1급·기사2급으로, 機能系는 機能長·기능사1급·기능사2급·기능사로 분류하였다.

특히 기사급이나 기능사급에 대해서는 社會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技術과 機能的인 資質을

保有한 者들을 발굴하여 그 資格을 부여하는데 큰 效果를 보고있는 것이며, 技術能力區分도 뚜렷하게 1급·2급으로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技術的 制度인 큰 成果라 할 수 있다.

4. 國家技術資格法은 高級技術人力을 經濟的·社會的으로 活用시키는데는 無氣力한 存在다.

國家技術資格法에서는 技術士에 關해서 產業에 관련이 있는 技術分野에 資格여부를 檢定을 通해서 認定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第10條 優待條項은 技術系·技能系를 총 망라한 資格取得者에게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社會的인 地位와 就業 및 身分保障만을 하게하는 扶持적인 表現일뿐, 具體的인 法適用方法등이 言及된바 없기때문에 莫然한 優待性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的·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查·試驗·施工·監理·評價·診斷·事業管理·技術判斷·技術仲裁 또는 이들에 관한 技術諮詢과 技術指導에 관한職務를 수행할 수 있는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입각한 應用能力을 보유한者』인데도能動的인 定義가 欠余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經濟社會的 및 科學技術의in 向上과 發展에 寄與할 수 있게 하는 活性化에 對해서는 이 法은 대단히 無氣力한 存在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現實인 것이다.

5. 國家技術資格에 關한 法令은 拙作化改定作業이 中止되고 再改善方向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가. 分野別에서 資格種目別 技術士 名稱으로 한 것은 拙作特號品

技術士에 關한 號稱은 先進外國에서도 法定號稱으로 『技術士』라 하게 되어 있으며, (舊)技術士法에서도 이와 같이 號稱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技術系아닌 他專門界에서도, 法曹界에서는 『辯護士』, 醫療界에서는 『專門醫』 醫藥界에서는 『藥師』, 財務會計界에서는 『公認會計士』 『稅務士』等으로 되고 있는것이 社會의 인通念인 것이다.

다만 각各 專門으로하는 部門의 表示를 위해 서는 技術士(機械)와 같이 表記할 수 있는 것 이다. 더욱 細部表示가 必要할경우 技術士(機械~車輛)으로 할수 있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 自己가 專門으로 할 수 있는것 을 浮刻시키기 위해서 (交通電動車 機關設計, 電動車軌道의 高速化研究)등과 같이 自己紹介를 하고 있다. ·

과거에도 金屬技術士라 하던것을 최근 개정한 법에서는 『鐵冶金技術士』 『表面處理技術士』 등과 같이 바꾸어 마침내 機能系列에서 생각하는 方式을 『技術士』들에게 까지 擴大解석하는 拙作 特號品이 되고 만 것이다.

나. 热原動機와 空調冷凍機를 同一種目으로

併合한 것은 拙作 1號品

热原動機의 範圍를 찾아보면 그 範圍가 대단히 넓어지며 그 專門性도 또한 깊다. 스텁보일러를 위시해서 热發生에 따른 原動機들은 모두 이 分野에 屬할 것이다.

反對로 冷凍機나 空調機에 있어서도 그 領域이나 專門性이 다를것이라고 본다. 극단적으로 보면 南極과 北極을 同一視한 見解이고, 技術士가 아닌 領域의 關聯者의 解석에 의한 拙作 法令 호칭의 1號인 것이며 현재 物議을 빚어내고 있는 問題點인 것이다.

다. 化工部門에 있어서도 燃料 및 潤滑油 種 目이 行方不明된 것은 法令改定 拙作 2號

이 部門에 관해서 別途로 論難이 會誌에 記載될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그 內容을 省略한다.

라. 生產管理分野를 抹消하고 產業應用에 編 入한것은 法令改定拙作 3號

工場管理·品質管理·包裝의 3個分野는 產業體에서 生產되고 있는 生產製品이나 生產方法과 手段 및 製品處理에 관한 專門知識들로當然히 1個部門으로 形成되어 있어야 하며 存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뜻은 法令 改定前에 改定作業會議에 出席해서 口頭意見을 充分히 밝힌바 있으며, 또한 公文書로서도 分明히 提示한바 있었다.

만일 改定해야 하겠다면, 日本技術士法에서도 『生產管理部門』을 『經營工學部門』으로 改定한바있는 國際的事例를 보아서, 國內法에서는 『產業工學部門』이나 『產業管理』로 改定해도 좋을것이라는 建議書가 發送된바 있었다.

이와같은 實務關係者들의 意見은 全혀 度外視한 法令改定의 處事는 그 結果가 拙作品을 만들어낸 것으로 마땅히 歸責받아야 할 일인것이며 再改善化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眼下無人の 獨善的인 行政의 處理方法도 改禍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生產管理의 各種目이 地球物理와 應用地質과 같이 共存되고 있기 때문에 그 區分이 分明치 못하게 된 混亂性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마. 應用地質과 地球物理를 產業應用이라는 테두리에 남겨두는 것은 拙作 4號

'91年 8月현재 應用地質에 165名, 地球物理에 53名이라는 技術士數가 輩出되고 있음을 볼때 각各을 獨立部門으로 하거나, 現行 日本技術士法에서 分類하고 있는것과 같이 이 2個分野를 뮤어서 應用理學部門으로 하는것이妥當할것으로 본다.

6. 國家技術資格法의 將來發展은 技術系人力管理→科學技術處, 機能系人力管理→勞動部, 人力活用→各部處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 活性化能力이 없는것을 活性化하려면

科學技術에 關한 專門人力을 管理하고 活性化시키는 關聯業務를 맡을곳은 政府各機關中에서는 당연히 科學技術處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專門的인 政策進行을 위해 서는 當然히 『技術士法』이 再制定되어야 할것이며 具體의인 活用方案에 關한 政策수립과 實行이 진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國家社會의거나 經濟活動에 있어 育成發展이 되게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國家技術資格法은 어떠한 名目으로라도 資格體系화의 制度이외에는 放害要因으로 作用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와같은 專門的인 科學人力의 活性化도 重要하지만, 모든 分野의 產業體에 關與 또는 直接從事하게 되는 技能人力역시 活力화시키는 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를 담당해야할 政府機構로서는 마땅히 適性的인 勞動部에서 育成發展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技術과 機能人力들을 管理하는데

는 科學技術處와 勞動部에서 각각 直接 관장하여 效果를 높여야 하겠지만, 이들 人力들을 모든 部處에서 利用이 되고 또 活用이 積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必要이상의 法令의 拙作改定이 없어야

앞에서 法令의 拙作改定事例를 들었지만, 이는 모두가 技術人力에 관한 管理能力이 없으면서 資格種目別로 單純整理하는 見解만 갖고 處理되어버린 큰 過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拙作過誤의 再發을 豫防하기 위해서도 國家技術資格法의 實質的(法定的)인 管理는 技術系는 科學技術處로 移管이 되고 機能系는 勞動部에서 管掌하는 法的分離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國家技術資格法에 關한 業務를 갖고있는 勞動部에서 高級技術人力을 管理할수 없으면 技術系에 關한 法令들은 이를 分割해서 마땅히 科學技術處로 法的移管이 이뤄져나가야 할 것이다.